

발행인 :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
 편집인 : 기획홍보과장
 서울특별시중랑구 봉화산길 179번지
 전 화 : 2094-0470 ~ 5



제1617호 2010. 2. 5.

조 례

제884호	서울특별시중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2
제885호	서울특별시중랑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	5
제886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	18
제887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7
제888호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1

인사발령

청경·상용직 신규임용 및 전보	44
기능직 공무원 전보	45
7급이하 승진임용	45

※ 전부서 및 의뢰기관에게 알려드립니다.

- ➡ 중랑구보 게재의뢰 및 편집 문의 TEL: 2094-0474 / FAX: 2094-0479
- ➡ 중랑구보 발간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발행
- ➡ 중랑구보 게재접수는 D-3일 18:00 까지 이며 공휴일은 날짜산정에서 제외

D-3일 접수 →
 D-2일 편집·교정 →
 D-1일 편집·교정 →
 D일 발간

- 🔴 구보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	--	--	--	--	--	--	--	--	--	--	--	--	--	--	--	--	--	--	--	--



조 례

서울특별시증량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증량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0년 2월 05일

서울특별시 증량구청장

서울특별시증량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지방세법 개정(2010. 1. 1)에 따라 종전의 사업소세 재산할이 “주민세 재산분”으로, 사업소세 종업원할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체계가 개편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신설
- 나. 사업소세 폐지

서울특별시중랑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3조, 제16조, 제17조 중 “사업소세를”을 각각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
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u>사업소세</u>를 면제한다.</p>	<p>제5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 ----- ----- ----- ----- <u>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u>을 면제한다.</p>
<p>제13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해서는 <u>사업소세</u>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p>	<p>제13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 ----- ----- ----- ----- <u>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u>을 -----</p>
<p>제16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는 <u>사업소세</u>를 면제한다.</p>	<p>제16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 ----- ----- ----- ----- <u>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u>을 -----</p>
<p>제17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서울특별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는 <u>사업소세</u>를 면제한다.</p>	<p>제17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 ----- ----- ----- ----- <u>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u>을 -----</p>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0년 2월 05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지방세법 개정(2010.1.1)에 따라 종전의 사업소세가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2010년 구세 조례 표준안」에 기초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함.

2. 주요골자

- 가. 구세의 세목 변경사항 반영(안 제3조)
- 나. 서류송달의 방법 통·반장을 통한 교부 신설(안 제13조의2)
- 다.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규정 신설(안 제14조의4)
- 라. 주민세 재산분 세목 신설(안 제28조부터 안 제30조까지)
- 마.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세목 신설(안 제31조부터 안 제33조까지)
- 바.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조항 정비

서울특별시중량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중량구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절 총칙

제1조(과세의 근거) 구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부과징수에 관하여 법령 그 밖에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세무공무원 : 서울특별시 중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구세에 대하여 그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의 규정과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 장소와 납부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구청장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세목) ① 구세는 다음 각 호의 보통세로 한다.

1. 면허세
2. 재산세
3. 주민세 재산분
4.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부과·징수

제6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구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구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조(납세증명서의 발급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발급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발급할 수 있다.

제8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신청서를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장된 기한 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신고납부 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해당 가산세는 그 연장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적용한다.

제9조(허가 등의 제한) 구청장이 영 제25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장소와 성명
2. 허가 등의 종목
3. 허가 등을 제한하는 이유
4. 그 밖에 참고사항

제10조(징수유예신청) 구세에 관하여 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탈루된 징수금의 처리) 누락,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세할 연도의 세율에 따라 해당 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제12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구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그 밖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제13조(공시송달)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① 영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서울특별시중랑구통·반설치조례」에 따라 위촉된 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요금 또는 송달수량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지방세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가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일반 우편에 따른 송달방법을 말한다.

제14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 영 제58조에 따라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58조 및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의2(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구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 관련 5급 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법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공인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률학 그 밖에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자
5.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③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시행규칙 제36조의3제5항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⑥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의3(과세표준심의위원회) ① 지방세에 관한 과세표준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하 "과세표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81조의2 및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의4(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①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5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보통세

제1절 면허세

제15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면허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면허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면허물건의 소재지
3. 그 밖에 직접 사용 또는 수익금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제16조(납기) 면허세의 납기는 다음과 같다.

1. 신규면허에 대한 면허세는 그 면허 증서를 교부받은 때
2. 면허의 갱신으로 간주하는 제2회분 이후의 매년분에 대한 면허세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다만, 법 제165조제1항 단서에 의해 면허세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 받은 자가 그 면허 증서를 교부 받을 때

제2절 재산세

제17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86조에 따라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 톤수 또는 적재량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18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 법 제186조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부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른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 조사에 따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1조(세율)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토 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5,000만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 + 5,0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 + 1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 + 2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 + 10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2. 건축물

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조 같은 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제2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녹지지역 및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영 제139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3. 주택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가목이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1천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 금액의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천분의 1.5)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 금액의 1천분의 4)

4. 선박

- 가.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5. 항공기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제22조(세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영 제14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1. 법 제1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공시가격(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2. 주택공시가격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3. 주택공시가격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제23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24조(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세조례」 제20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증축·개축한 때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토지·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 토지·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
4. 과세토지·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② 납세의무자가 건축물 또는 건물과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연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세조례」 제20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5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세조례」 제20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선박을 취득한 때
2. 선박이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선박이 과세선박으로 된 때
5. 과세선박이 비과세선박으로 된 때

제26조 (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세조례」 제20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항공기를 취득한 때
2. 항공기가 매도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4. 비과세항공기가 과세항공기로 된 때
5. 과세항공기가 비과세항공기로 된 때

제27조 (재산세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주민세 재산분

제28조(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 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9조(세율) ① 법 제176조의4제2항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9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30조(신고의무) ①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세조례」 제20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4절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제31조(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8조에 준하는 관계 증빙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제32조(세율) 법 제179조의7제2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33조(신고의무) 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항은 제30조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3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장 제4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0년 2월 05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서울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를 기초로 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 규정 신설(안 제3조제5호, 안 제4조제2항)

- 1) 고의 또는 과실로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공제 또는 환급받은 자를 적발하여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 규정 신설

나. 포상금 지급한도 입법 미비규정 보완(안 제4조)

- 1) 점용료, 사용료, 과태료 탈루세원을 부과하게 한 경우 지급한도 규정(제1항)
- 2) 탈루세액의 중요한 자료 제공 등을 통해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 지급한도 규정(제2항)

다.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목적 명확화(안 제5조제1항)

- 1) ‘미수액 징수’ 심의 ⇒ ‘세정발전과 세입증대’ 심의로 목적을 명확히 함

라. 포상금 지급시점 보완(안 제8조제2항)

- 1) 제안, 제도개선을 제외한 모든 포상금은 수납이 확인된 이후에 지급
- 2) 부과 또는 징수액에 행정쟁송 등 다툼이 있는 경우에 그 쟁송이 종결되어 채권이 적법한 것으로 확정된 이후에 지급하도록 단서 규정 신설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정비

서울특별시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서울특별시중랑구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체납액 일체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로서 제5조에 따른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특별공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급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부정급수 또는 지하수·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5. 고의 또는 과실로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공제 또는 환급받은 자를 적발하여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의 추징에 관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중요한 자료”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에 준하는 자료를 말한다.
 - 가.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통고처분하거나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 나. 가목 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국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제공된 자료에 따른 탈루세액 등이 신고건당 1천만원 미만이거나 그 자료에 대한 사실검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1) 탈루세액 등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 징수액의 100분의 5
 - 2) 탈루세액 등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50만원+5천만원 초과징수액의 100분의 3
 - 3) 탈루세액 등이 1억원 초과 : 400만원+1억원 초과징수액의 100분의 2
7.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중랑구 공무원 제안 규칙」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

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따라 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 ② 제3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제5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세정발전과 세입증대 공적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각 국별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4명 이상 6명 이하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
-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련된 사항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에 관련된 사항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에 관련된 사항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 ⑥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대장비치) 세입금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포상금지급대상)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부과징수대장(포상금지급대상)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지급)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하는 포상금은 「지방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제9조(환수)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회의 포상금 지급 심의대상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접수되는 포상금 지급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포상금지급대상)

(단위 : 원)

징수 월일	징수자		체납자			징수내역				징수 확인 (담당주사)	특별 징수 공적 (사유)	포상금 청구 (지급)액	지급일	
	직급	성명	주소	성명	주민등록 번호	년도 기분	과세 번호	세 목	징수액					

※본 대장은 가능한 한 직원 개인별로 작성

신문-용지 54 g / m²
268mmX190mm

숨은 세원발굴 부과징수대상(포상금지급대상)

(단위 : 원)

남 기	부과자(제보자)		세 목	구 분	발굴세원	납세의무자			징수 일자	징수 확인 (담당주사)	포상금지급	
	직급 (주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 번호			포상금액	지급일 사유

※ 본 대장은 가능한 한 직원 개인별로 작성

신문용지 54 g / m²
268mmX190mm

포 상 금 지 급 신 청 서

신 청 자			징수(세원발굴)액				청구액	거래은행 계좌번호	비고
소속(주소)	성명	생년월일	건수	합계	본세	가산금			

신문용지 54 g / m²
190mmX2,658mm

- ※ 1.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사결정서를 첨부하여 청구
- 2. 비고란에 포상금 지급 적용 기준조항 등을 기록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0년 2월 05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8. 7. 1.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 법제처 정비 기준에 맞게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료에 합산 고지됨에 따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제명을 개정 (안 제1조, 제3조, 제5조, 제7조)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률용어 개정 (안 제3조)

서울특별시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서울특별시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국민건강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각각 “보험료”로 하고,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 중 “국민건강보험료”를 “보험료”로 한다.

제7조 중 “국민건강보험료”를 “보험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서울특별시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질병, 실직,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틈새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생략)</p> <p>제3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저소득 틈새계층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의 지역가입자이며,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원 이하인 세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세대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5. (생략) 6. 기타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세대 <p>제4조 (생략)</p> <p>제5조(지원시기) 지원시기는 연중 실시하되, 월 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p>	<p>서울특별시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p> <p>제1조(목적)</p> <p>.....</p> <p>.....</p> <p>.....</p> <p>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p> <p>제2조 (현행과 같음)</p> <p>제3조(지원대상) 보험료</p> <p>....., 보험료</p> <p>..... 각호의 어느 하나.....</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p>제4조 (현행과 같음)</p> <p>제5조(지원시기)</p> <p>..... 보험료</p>			

현	행	개	정	안
제6조 (생략)		제6조 (현행과 같음)		
제7조(예산 확보) 구청장은 <u>국민건강보험료</u> 지 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 확보) …………… <u>보험료</u> …………… …………… ……………		
제8조 (생략)		제8조 (현행과 같음)		
제9조 (생략)		제9조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0년 2월 05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 제정이유

최근 잦은 기후 변화와 재난사고의 대형화로 인하여, 재난대응에 대한 정부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 민간부문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자율방재단의 평상시 재난예방 활동과 유사시 초기 수습활동이 가능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방재단의 조직구성(안 제4조) - 300명 이하(동별 10명 이상, 단체 20명 이하)
- 나. 방재단장 및 임원의 임기 2년, 연임할 수 있음(안 제5조)
- 다. 방재단 임무를 정함(안 제7조)
- 라. 방재단의 운영 및 지원사항을 정함(안 제9조)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방재단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3조(명칭) 명칭은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구성) 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중랑구 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부단장과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단원, 전문단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개인단원은 별지 제2호 서식, 단체단원은 별지 제2-1호 서식으로 가입신청하고, 단체단원의 명단은 별지 제2-2호 서식으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방재단의 개인단원은 중랑구 거주자를 중심으로 각 동별 방재단을 구성하고, 단체단원은 직능단체 및 자격·경력자를 중심으로 현장운영반, 대피소운영반, 급수·급식반, 교통통제반, 의료구호·방역반, 건물복구반, 차량장비 지원반 등의 전문단원으로 구성하며 방재단장의 직속으로 한다.

⑥ 방재단의 단원은 총 300명 이하로 하되, 각 동별 방재단은 대표 1명, 부대표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으로 하며, 각 단체단원의 구성원은 대표 1명, 부대표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로 하고, 동별 방재단과 단체단원의 대표는 구성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에 따라 선출하고, 부대표, 간사는 대표가 지명한다.

⑦ 동별 방재단원은 중랑구 방재단원이 되며, 중랑구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 제5조(임원 및 임기 등)** ① 단장은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 시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비상연락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④ 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제6조(자율방재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부단장, 간사,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협의회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방재단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7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은 일반단원과 전문단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무를 부여한다.
 ③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등 활동 전개
- ④ 방재단은 다른 지역의 피해 발생시에 인력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해 발생시 구청장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동 방송시설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제9조(운영·지원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분기 1회 이상 별지 제4호 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방재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 시 중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재난안전대책본부”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안전대책본부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단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중랑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⑧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비용,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요청에 소요되는 경비
7.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제10조(해촉) 구청장은 단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단원이 중랑구 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2.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

제13조(교육) 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임원 및 단원은 연 1회 4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재난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사항은 해당 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4조(훈련) 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훈련은 매년 1회 2시간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①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지도·감독) 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년1회 지도·감독한다.

③ 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은 회수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촉장

주소
성명

귀하를 증랑구 자율방재단장(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증랑구청장

[별지 제2호서식]

중랑구 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개인>

등록번호 : _____

성 명	(남·여)	연 령		혈 액 형	
주 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		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희 망 활동내용					
[특이사항]					

상기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재단에 가입을 신청하기
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재단장 귀하

중랑구 자율방재단 가입신청서<단체>

등록번호 : _____

단체명				대표자	(휴대전화 : _____)
주소				대표전화	
담당자	(휴대전화 : _____)			부서명	
인원	남명	여명	총인원	명	
장비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지원가능	남명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여명				
전문분야					
활동희망분야					
[특이사항]					

상기 본 단체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재단에 가입을 신청하기에 가입신청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2-2호서식]

[가입신청 자율방재단 명부]

[단체명]

연번	성명	성별	연령	자격증 및 기능	운전가능 여부	혈액형	비고
1							
2							
3							
4							
⋮							

활 동 확 인 서

성 명		(인)	등록번호	
활동내용	사 유			
	방 법			
	시 간			
	장 소			
	내 용			
[건의사항]				
확인자	직위	동 대표	성명	(인)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재단의 단원으로써 상기와 같이 활동 하였기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재단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록 번호	성 명	활 동 상 황		비고
		횟수	시간	
1				
2				
3				
⋮				

[별지 제5호서식]

‘〇〇년도 연중 활동계획서

[중랑구자율방재단]

월별	주요내용	비고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인사발령

청경 · 상용직 신규임용 및 전보

2010. 2. 2.

중량구청장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직위)	직급
1	조준호	청원경찰에 총무과 근무를 임명함	(신규)	
2	김경옥	총무과 근무를 명함	공원녹지과	상용직
3	박순임	총무과 근무를 명함	면목제3·8동	상용직
4	전인석	상용직에 총무과 근무를 임명함	(신규)	
5	이승준	상용직에 기획홍보과 근무를 명함	(신규)	
6	임소연	상용직에 민원여권과 근무를 명함	(신규)	
7	국승진	상용직에 공원녹지과 근무를 명함	(신규)	
8	신주영	상용직에 교통행정과 근무를 명함	(신규)	
9	김혜리	상용직에 보건행정과 근무를 명함	(신규)	
10	백금연	면목제3·8동 근무를 명함	총무과	상용직

기능직 공무원 전보

2010. 2. 2.

중랑구청장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	직급
1	박종훈	구의회사무국 근무를 명함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기능 9급 지방조무원 (지도)

7급이하 승진임용

2010. 2. 5.

중랑구청장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직위)	직급
1	오경식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행정국 자치행정과	지방행정 주사보
2	송석재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도시환경국 주택과	지방행정 주사보
3	김관일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건설교통국 도로과	지방행정 주사보
4	임병춘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	지방행정 주사보
5	임호관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상봉제 2동	지방행정 주사보
6	임금용	지방행정주사에 임함	중화제 2동	지방행정 주사보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직위)	직급
7	최유미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행정국 민원여권과	지방행정 서기
8	김준명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도시환경국 주택과	지방행정 서기
9	오승미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망우본동	지방행정 서기
10	양미아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중화제2동	지방행정 서기보
11	최정순	지방세무주사보에 임함	재정경제국 세무1과	지방세무 서기
12	박현선	지방세무주사보에 임함	재정경제국 세무2과	지방세무 서기
13	박연미	지방사회복지서기에 임함	면목제4동	지방사회복지 서기보
14	방승호	기능7급지방기계장에 임함	주민생활지원국 청소행정과	기능8급 지방기계원
15	강사은	기능8급지방기계원에 임함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	기능9급 지방기계원
16	강태룡	기능8급지방기계원에 임함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	기능9급 지방기계원
17	김대근	기능9급지방기계원에 임함	주민생활지원국 청소행정과	기능10급 지방기계원
18	이조웅	기능7급지방운전장에 임함	행정국 총무과	기능8급 지방운전원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직위)	직급
19	정성영	기능 7 급 지방운전장에 임함	행정국 총무과	기능 8 급 지방운전원
20	김민우	기능 9 급 지방운전원에 임함	상봉제 2 동	기능 10 급 지방운전원
21	이미화	기능 7 급 지방조무장에 임함	상봉제 2 동	기능 8 급 지방조무원
22	이윤주	기능 8 급 지방조무원에 임함	행정국 기획홍보과	기능 9 급 지방조무원
23	김민주	기능 8 급 지방조무원에 임함	행정국 민원여권과	기능 9 급 지방조무원
24	신지석	기능 8 급 지방조무원에 임함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기능 9 급 지방조무원
25	김미리	기능 9 급 지방조무원에 임함	행정국 총무과	기능 10 급 지방조무원
26	김정환	기능 9 급 지방조무원에 임함	행정국 총무과	기능 10 급 지방조무원
27	이혜림	기능 9 급 지방조무원에 임함	행정국 총무과	기능 10 급 지방조무원
28	홍남주	기능 9 급 지방조무원에 임함	행정국 총무과	기능 10 급 지방조무원
29	김재환	기능 9 급 지방조무원에 임함	행정국 자치행정과	기능 10 급 지방조무원
30	지명기	기능 9 급 지방조무원에 임함	행정국 자치행정과	기능 10 급 지방조무원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직위)	직급
31	김형준	기능 9 급 지방 조무원에 임함	행정국 민원여권과	기능 10 급 지방조무원
32	이영미	기능 9 급 지방 조무원에 임함	행정국 전산정보과	기능 10 급 지방조무원
33	김지영	기능 9 급 지방 조무원에 임함	재정경제국 재무과	기능 10 급 지방조무원
34	이지영	기능 9 급 지방 조무원에 임함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	기능 10 급 지방조무원
35	가지연	기능 9 급 지방 조무원에 임함	주민생활지원국 청소행정과	기능 10 급 지방조무원
36	조경진	기능 9 급 지방 조무원에 임함	도시환경국 주택과	기능 10 급 지방조무원
37	권경민	기능 9 급 지방 조무원에 임함	도시환경국 건축과	기능 10 급 지방조무원
38	김주민	기능 9 급 지방 조무원에 임함	면목제 4 동	기능 10 급 지방조무원
39	이영숙	기능 9 급 지방 조무원에 임함	상봉제 1 동	기능 10 급 지방조무원
40	이재춘	기능 9 급 지방 조무원에 임함	중화제 1 동	기능 10 급 지방조무원
41	이성실	기능 9 급 지방 조무원에 임함	묵제 1 동	기능 10 급 지방조무원
42	조미애	기능 9 급 지방 조무원에 임함	망우제 3 동	기능 10 급 지방조무원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직위)	직급
43	조순재	기능 7 급지방방호장(경비)에 임함	도시환경국 도시디자인과	기능 8 급 지방방호원 (경비)
44	이상남	기능 8 급지방조무원(지도)에 임함	감사담당관	기능 9 급 지방조무원 (지도)
45	이영진	기능 8 급지방조무원(지도)에 임함	감사담당관	기능 9 급 지방조무원 (지도)
46	김성우	기능 8 급지방조무원(지도)에 임함	행정국 총무과	기능 9 급 지방조무원 (지도)
47	윤형오	기능 8 급지방조무원(지도)에 임함	행정국 총무과	기능 9 급 지방조무원 (지도)
48	정광훈	기능 8 급지방조무원(지도)에 임함	행정국 총무과	기능 9 급 지방조무원 (지도)
49	최성일	기능 8 급지방조무원(지도)에 임함	행정국 총무과	기능 9 급 지방조무원 (지도)
50	강민도	기능 8 급지방조무원(지도)에 임함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	기능 9 급 지방조무원 (지도)
51	이명식	기능 8 급지방조무원(지도)에 임함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기능 9 급 지방조무원 (지도)
52	지병훈	기능 8 급지방조무원(지도)에 임함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체육과	기능 9 급 지방조무원 (지도)
53	심상철	기능 8 급지방조무원(지도)에 임함	주민생활지원국 청소행정과	기능 9 급 지방조무원 (지도)
54	이준호	기능 8 급지방조무원(지도)에 임함	주민생활지원국 청소행정과	기능 9 급 지방조무원 (지도)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직위)	직급
55	한희수	기능 8 급지방조무원(지도)에 임함	주민생활지원국 청소행정과	기능 9 급 지방조무원 (지도)
56	임영태	기능 8 급지방조무원(지도)에 임함	도시환경국 주택과	기능 9 급 지방조무원 (지도)
57	엄기상	기능 8 급지방조무원(지도)에 임함	도시환경국 도시디자인과	기능 9 급 지방조무원 (지도)
58	홍창표	기능 8 급지방조무원(지도)에 임함	도시환경국 도시디자인과	기능 9 급 지방조무원 (지도)
59	구본규	기능 8 급지방조무원(지도)에 임함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	기능 9 급 지방조무원 (지도)
60	송연주	기능 8 급지방조무원(지도)에 임함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	기능 9 급 지방조무원 (지도)
61	이영태	기능 8 급지방조무원(지도)에 임함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	기능 9 급 지방조무원 (지도)
62	정인철	기능 8 급지방조무원(지도)에 임함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	기능 9 급 지방조무원 (지도)
63	황영락	기능 8 급지방조무원(지도)에 임함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	기능 9 급 지방조무원 (지도)
64	김승재	기능 8 급지방조무원(지도)에 임함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기능 9 급 지방조무원 (지도)
65	김재동	기능 8 급지방조무원(지도)에 임함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기능 9 급 지방조무원 (지도)
66	방양혁	기능 8 급지방조무원(지도)에 임함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기능 9 급 지방조무원 (지도)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직위)	직급
67	이기호	기능 8 급지방조무원(지도)에 임함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기능 9 급 지방조무원 (지도)
68	정영화	기능 8 급지방조무원(지도)에 임함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기능 9 급 지방조무원 (지도)
69	이대용	기능 8 급지방조무원(지도)에 임함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기능 9 급 지방조무원 (지도)
70	최수용	기능 8 급지방조무원(지도)에 임함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기능 9 급 지방조무원 (지도)
71	김주호	기능 8 급지방조무원(지도)에 임함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	기능 9 급 지방조무원 (지도)
72	김문철	기능 8 급지방조무원(지도)에 임함	보건소 보건위생과	기능 9 급 지방조무원 (지도)
73	신문섭	기능 8 급지방조무원(지도)에 임함	보건소 보건위생과	기능 9 급 지방조무원 (지도)
74	최영진	기능 8 급지방조무원(지도)에 임함	보건소 보건위생과	기능 9 급 지방조무원 (지도)
75	박종훈	기능 8 급지방조무원(지도)에 임함	구의회사무국	기능 9 급 지방조무원 (지도)